

'24년 장애인정책국 주요 사업 추진계획

<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, '23. 11. 16.>

1 장애인정책과

< '24년 장애인정책국 예산 >

- '24년 장애인정책국 소관 정부 예산안은 총 5조 1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.1%(정부 전체 예산은 2.8%) 증가
 - ①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확대 ('23 2,569억 → '24 3,567억, 38.9% ↑)
 -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통합 돌봄서비스 실시
 - * 주간 그룹형(1,500명), 주간 개별형(500명), 24시간 개별형(1개→17개)
 -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 인원 1천명 확대(1.0만 명→1.1만 명)
 - 보호자의 부재 시 이용 가능한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확대(55억 원→72억 원)
 - ②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('23 1조9,919억 → '24 2조2,846억, 14.7% ↑)
 - 지원 대상(11만 5000명→12만 4000명) 및 제공 평균시간 확대(월127시간→131시간)
 - 가산급여 '지원 평균 시간' 확대(151.5시간 → 195시간)
 - ③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 강화 ('23 1,757억 → '24 1,940억, 10.4% ↑)
 -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인원(7만9천명→8만6천명) 및 중증장애아 돌봄 시간 120시간 확대(연 960시간→1,080시간)
 - ④ 장애인 일자리 지원 확대 ('23 2,072억 → '24 2,269억, 7.4% ↑)
 - 장애인일자리사업 대상자 '23년 대비 2천명 확대(3.0 → 3.2만명)

< 장애인 종합조사표 개정 관련 연구 >

- (추진경과) '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개선' 과제*는 「제6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('23~'27)」에 포함되어 추진 중
 - * 장애 특성욕구를 반영하는 지표 개발을 통해 서비스 필요도 측정 및 다양한 서비스 적용 목표
 - 현재 '종합조사 지표 개발' 연구용역* 진행 중이며, 결과를 기초로 장애특성, 개인의 욕구와 환경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 예정
 - * 시각, 정신, 중복장애 등 장애 특성을 반영하고 다양한 욕구(대인관계 유지·발전 욕구 등) 파악을 위한 신규 지표 개발(인제대학교산학협력단 수행, '23.8.~'24.3.)
- (향후계획) 연구결과 기초한 개정안에 대해 제2기 고시개정전문위원회 운영 및 각 계 의견 수렴하여 법령 개정 추진('24년 하반기~'25년 상반기)

< 장애인 개인예산제 >

<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사업모델>

- ◇ (급여유연화 모델) 활동지원 급여 일부(10%내)를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공공·민간서비스 구매 활용
- ◇ (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) 활동지원 급여 일부(20%내)를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서비스 제공인력을 선택하여 이용

- (추진경과)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 계획*에 따라 국내·외 제도 분석,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기초 모델을 개발('22)하고, '23년 모의적용 연구 수행
 - ※ 도입계획: ('22) 모델개발 → ('23) 모의적용 → ('24~'25) 시범사업 → 본사업
 - 총 120명 목표에 123명 신청, 부적격·중도포기 등 제외하고 88명 참여 중(9.30.기준)
 - * (지역별 참여자수) 마포구 29, 예산군 16, 세종시 22, 김포시 21
 - 올해 대비 사업 규모를 2배 확대하여 8개 지역, 210명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위해 관련 예산 965백만원 편성(국회 심의 중)
- (향후계획) 모의적용 종료(11월) → 연구결과 평가·분석 및 '24년 시범사업 계획 수립(12월)
 - 민관협의체(장애인 단체, 학계 전문가 등) 구성(~'23.12월) 및 의견수렴

2 장애인권익지원과

< 장애인권리협약 제2·3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이행방안 수립 >

- (추진 경과) 최종견해의 선언적 성격, 광범위성 등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연구, 장애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견해 79개에 대해 18개 기관-137개 이행과제 선정
 - 이행과제별 소관부처(부서)에서 연차별 이행계획 수립 중으로, 이행과제 보완 및 소관부처 조정 등 협의 실시
 - (향후계획) 2024년 상반기,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(국무총리 위원장)에 상정하여, 심의·의결 예정
 - 매년 이행상황 점검 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 예정
 - 사회적 환경, 장애인 정책의 변화 발전 등을 고려하여, 최종견해 이행의 내실화를 위해 이행과제 보완 등 실시
- * 이행상황 점검 과정에서 장애계 의견 수렴 등 실시

<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>

- (추진경과) '09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* 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,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모니터링 접근법 부재
 - *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「장애인차별금지법」 제정 (07.4. 공포 / '08. 4. 시행)
 -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(3년 주기)를 내용으로 하는 「장애인차별금지법」 개정으로, '21년 첫 실태조사 실시
 -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대상인 모집단을 명확히 하고, 이에 따른 표본조사 실시 및 결과, 결과 활용방안 등 요구
- (향후계획)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수행기관 선정('24.상)
 - 실태조사 수행 및 결과 공표 추진('24.하)

< 21년 대비 신규 주요 사항 >

-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('23년 시행)에 따른 모바일앱, 키오스크 접근성 편의 제공 의무에 관한 조사 실시
- 법상 모든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특정 영역에 대한 심층 조사 실시
 - * 장차법 이행 수준이 낮은 영역에 대한 심층 조사 및 실질적 개선 유도

3 장애인자립기반과

- (장애인일자리 확대) 장애인일자리 전년 대비 2,000명 확대*(‘23년 29,546명→’24년 31,546명)
 - * 일반형 100명, 복지일자리 1,500명,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200명,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200명
-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협약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(‘24년)
- (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평가도입) 보조사업 연장평가 시 지적에 따라, 총 18개 판매시설에 대한 조직·사업·이용자 만족도 등 시설평가 예정(‘24년)
- (장애인보조기기지원) 수요자 중심의 보조기기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조기기교부 품목 확대* 및 단가 인상**
 - * ’23년 38개 → ’27년 46개 품목
 - ** 신호장치 15 → 58만원, 헤드폰 12 → 80만원, 녹음 및 재생장치 50 → 90만원, 영상확대비디오시스템 80 → 270만원
- (우선구매 비율 확대)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장애인 소득보장 및 구매촉진 지원을 위해 우선구매 비율 상향(1→2%) 추진
 -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(김예지 의원, 이종성 의원)으로 정기국회 통과 위한 공조 등 협력 필요

※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(2023.7.4.)

약자복지·취약계층 지원 분야 추진과제 중 장애인분야에 “중증장애인 직업 재활 지원 강화” 과제로 ‘국가·공공기관 등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확대(1→2%)’ 포함

4 장애인서비스과

<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>

- 주간 그룹형 1:1 지원 ('24) 40,484백만원(순증)
: 발달장애인 그룹형 주간활동서비스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참여 가능하도록 전담인력 배치 지원('24. 1,500명)
- 주간 개별 1:1 지원 ('24) 14,004백만원(순증)
: 장애인복지관 등에 시설 보강과 전문인력(이용인 1명당 종사자 1명)을 지원하여 개인별 맞춤형 낮 활동 서비스 제공('24. 500명)
- 24시간 개별 1:1 지원 ('23) 1,500백만원 → ('24) 17,152백만원
: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(낮 활동 + 주거지원·야간돌봄)을 위해 24시간 돌봄 시범사업(광주, 20명)을 전국으로 확대('24. 17개 시도 340명)

<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시간 확대 >

- 중증 장애아 돌봄 시간 연 120시간 확대(연 960→1,080시간)
 -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의 경우 1,080시간 범위 내에서 전액 정부지원
 - 소득기준 초과 시 40% 본인부담하여 서비스 이용 가능

	연 1,080시간 이내	초과 시
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	무료	전액 본인 부담 (시간당 12,140원)
기준중위소득 120% 초과	본인 부담 40%	

* '21년까지는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정에 대해 전액 지원하였으며, 소득기준 초과 가정은 미지원하였으나, '22년부터는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120% 초과 가정도 본인부담(40%) 도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

5 장애인건강과

<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추진 >

장애인 건강보건통계 활용 등 근거기반한 정책 발굴을 통해 정책대상자의 수용성을 높이고,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보완할 수 있는 '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(안)'을 마련하겠습니다.

□ 추진배경

- 장애인 건강권법(제6조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)에 따라 5년마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
- 지금까지는 총괄정책 내 세부분과*로 포함되었으나,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체계적인 건강보건관리 계획수립 필요
- * '23.3월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內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계획 포함

□ 추진내용

- 복지부, 국립재활원(사무국), 현장전문가, 장애계 등 참여하는 '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정책과제 발굴 전략기획단(단장: 방문석 원장)' 구성*
- * 보건복지부, 전략기획단, 기획사무국(국립재활원), 자문기구(한국보건사회연구원, 한국건강증진개발원, 한국장애인개발원), 장애계(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,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)
- 정책여건 진단 및 중장기 추진과제 발굴을 위해 총괄위원회(3회, 6.14., 7.20., 8.23.) 및 분과별* 회의 주기적 운영(6월~)
- * 8개 분과(전달체계·인프라, 재활의료, 발달·정신, 외부기능, 내부기관, 여성장애인, 보조기기·기술개발, 재활운동 및 체육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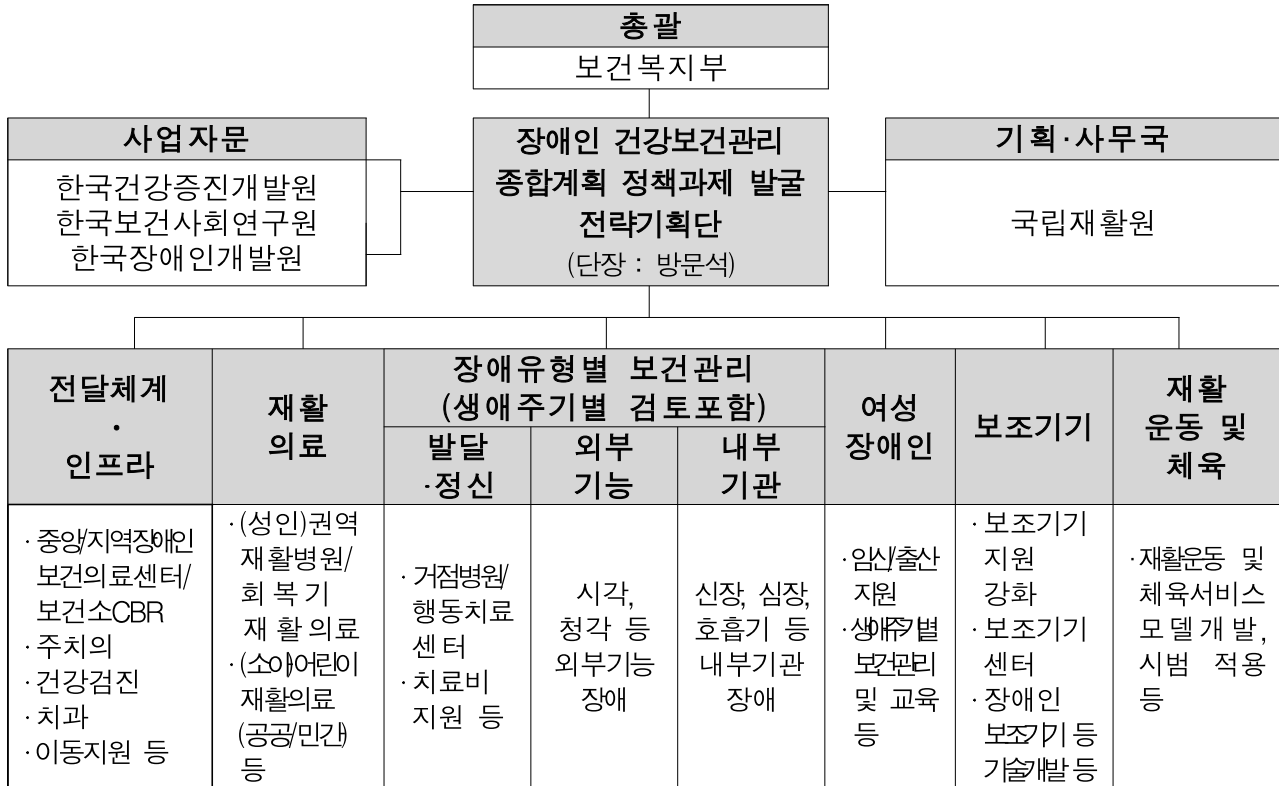
□ 향후계획

-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주요정책과제 발굴 및 종합계획 초안 마련(~12월)
- 공청회, 부처협의, 장애인정책조정위 심의 등을 거쳐 종합계획 확정('24년)

참고

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정책과제발굴 전략기획단

□ 전략기획단 구성·운영



□ 조직별 역할

구분	주요 역할
보건복지부	- 사업기획, 관계기관 협의, 의사결정 - 사업계획 및 결과 보고 검토·최종 승인 - 종합계획 공청회 주최 및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운영
전략기획단	- 종합계획 수립 전략기획단 구성·운영(총괄/분과별 회의) -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비전 및 목표 설정 분과별 과제 조정 -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중점, 세부 정책과제 설정(분과별) -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성과지표 설정(분과별)
기획·사무국 (국립재활원)	-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추진 전략기획단 기획 및 운영 지원, 기초연구 수행 - 분과별 사업계획 및 수행 경과, 결과 보고, 종합계획 공청회 주관 - 추진단 사업관리 및 의사결정 지원·조정 - 중앙·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지역사회 협력체계 의견수렴 등 참여 지원 -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 지원
사업자문 (한국보건사회연구원) (한국건강증진개발원) (한국장애인개발원)	-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분과별 리뷰(한국보건사회연구원) -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(HP2030) 연계·반영 및 성과지표 설정 자문(한국건강증진개발원) - 전달체계·인프라(BF, Barrier Free 관련), 발달·정신, 외부기능 장애, 내부기관 장애, 여성장애인 등 관련 정책 자문(한국장애인개발원)